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정진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2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및 회계·재산관리에 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“서울교통공사 사장”에게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,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영개선 요구를 따르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장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